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사생 수칙

제정 2012. 3. 1.

개정 2016. 10. 12.

개정 2019. 6. 10.

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1. 8.

개정 2021. 10. 7.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사생이 입사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생실 배정) 사생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배정된 사생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외부인 출입제한) 사생이 아닌 자를 관내에 데리고 올 수 없다.

제4조(일과시간)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 식 : 07:30 - 09:00

② 중 식 : 12:20 - 13:50

③ 석 식 : 17:30 - 18:50

④ 귀사 시간 : 01:00

제5조(사생자치회) ① 사생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임원은 생활관 공동생활에서 사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고 협조한다.

③ 사생 자치회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관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식사절차)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식사는 지정된 식당에서만 할 수 있다.

② 환자 등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식사를 사생실로 운반할 수 있다.

제7조(외박, 외출신고) ① 사생이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행정실을 경유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출자는 익일 01:00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한다.(01-05시 출입금지)

제8조(인원 등 점검) 인원점검은 야간점호 01:00~01:30에 실시하거나 기타 출입기록 등을 근거하여 출입 제한시간 이외 출입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불시에 실시할 수 있고 사생실의 인원, 청소 및 활용상태 등을 점검 한다.

제9조(공고, 게시 및 문서배포, 우편물 수취) ① 사생은 지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모든 공고 및 게시는 게시 후 3일이 경과되면 사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인지 하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생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생이 관내에 공고게시 및 문서배포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실을

경유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우편물 및 택배의 수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우편물 및 택배는 경비실과 수취함 또는 행정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본인이 직접 받는다.
2. 특수 우편물은 게시 등으로 받을 사람에게 알리고 본인이 직접 받는다.

제10조(상담 및 건의) 사생은 관장에게 건의 또는 상담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물의 관리 및 고장신고) 사생은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내용과 사유 등을 행정실 및 관리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형태는 관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제12조(화기 및 청소책임) 사생은 사생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세탁) 사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장이 인정하는 세탁물에 한정하여 세탁할 수 있으며 부과된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사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및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하며 변상금은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제15조(생활관비 납부) 입사생은 매학기 및 방학 시작 전 고지된 생활관비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기 및 방학 개시일 이후 입사자는 날수대로 계산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행위) 사생은 사생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도박, 음주, 폭행, 소란, 소음, 절도
2. 텔레비전, 음향기기, 전열기, 가전제품 등의 사용 또는 반입(단 소형 라디오(스피커 부착), 드라이어는 제외함)
3. 인화물질,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
4. 시설물의 임의 이동, 제공, 변형, 손상, 파괴
5. 낙서, 유인물, 부착물, 공고물 등의 무단게시, 전시 및 배포
6. 사생이 아닌 자의 관내 무단 거주
7. 사생이 아닌 자의 관내 무단 취식
8.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령, 개봉
9. 공고물 훼손
10. 무단 외박
11. 침실 외 잠옷 착용
12. 필요이상 타인의 방 왕래
13.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
14. 01:00시 이후 불필요한 관내 왕래
15. 생활관 주변 고성방가
16.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7조(벌점) ① 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경고 또는 퇴사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벌점의 유효기간은 해당학기(1학기는 하계방학, 2학기는 동계방학

을 포함)로 한다.

제18조(훈계) ① 관장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 훈계할 수 있다.

② 별점 행위의 정도에 따라 관장은 생활관 직원 및 관리인이 요청하면 사생의 부모를 소환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지도를 할 수 있다.

제19조(퇴사절차) ① 입사 취소 또는 중도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사 신청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행정실을 경유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생의 입사 취소 및 중도 퇴사에 따른 환급액은 생활관 규정 제 31조에 따른다. (개정 2018. 4. 5.)

제20조(준칙제정) 관장은 이 수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별점 부과 및 퇴실명령 과 미신청 끼니식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수칙은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9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수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호, 2012. 3. 1.)

[별표1]

사생 수칙 벌점 기준표 (* 벌점 5점 도달 시 퇴사를 원칙으로 함)

번호	항 목	세 부 항 목	벌점	조치
1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생활관에서 절도, 폭행 행위	5	퇴사
2		생활관 내부 및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5	퇴사
3		사생이 아닌 타인(외부인 및 타동/호실에 사는 사생)을 입실시키거나, 취침하게 한 행위	5	퇴사
4		무단으로 입실하거나 호실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5	퇴사
5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5	퇴사
6		사생실 내 음주, 소란, 도박 행위	5	퇴사
7		타 사생의 인터넷 연결을 제한시키는 행위(P2P 서버 운영 등)	4	경고
8		생활관 내 허락없이 남, 여 호실 왕래 행위	4	경고
9		사생실 내 청소상태가 불량한 사생 (거실, 화장실 포함)	2	경고
10		이기적인 생활로 인하여 타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민원 신고 접수시)	2	경고
11	학생 품행에 어긋난 행위	사생실내 무단 불법집회 및 학칙위반 행위	5	퇴사
12		동일한 내용으로 생활관에서 경고 2회 이상 받은 경우	5	퇴사
13		학생 품행에 어긋난 행위로 인하여 생활관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5	경고 또는 퇴사
14		생활관 교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예: 코로나19 관련 신고의무, 방역수칙 위반 등 생활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5	경고 또는 퇴사
15		외박 신청 (인터넷, 외박대장)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박한 행위	2	경고
16	공용비품 손상 및 파손 행위	사생실 내 의도적으로 비품 (전자제품, 기타)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	5	퇴사
17		사생실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한 행위 (예: 버너, 부탄가스 등)	5	퇴사
18		생활관 내 불법 유인물 부착 및 전시 행위	2	경고
19	생활관 내부 에서 취사 행위 및 전열기를 소지한 행위	사생실 내 취사 및 전열기를 (취사도구, 가전제품) 사용하거나 소지한 행위 (예: 전기장판, 온풍기, 밥솥, 냉장고, 전동킥보드, 에어프라이어 등)	5	퇴사
20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생활관 내부에서 취식하는 행위	2	경고
21	식당 무단취식	사생이 아닌 사람을 데려와 식사를 하게 한 행위	5	퇴사
22		유료시설 무단사용 또는 미신청 끼니의 식사를 하는 행위(위반시 변상금 30배)	4,5	경고 또는 퇴사
23	안전수치기 위반	사생실 앞 복도에 빨래건조대를 두는 행위	3	경고

[별표2]

사생 수칙 상점 기준표 (* 별점과 상계 가능하나, 퇴사 해당 별점 5점 발생 시 상계없이 퇴사)

번호	항 목	세 부 항 목	상점	조치
1	생활관생의 안전과 시설보호에 기여한 행위	화재 진압, 안전사고 발생시 신고 또는 응급 구조	2~5	상점 부여 및 별점과 상계
2		외부인 출입자 신고		
3	생활관생 수칙 위반자 신고 행위	무단 거주자(사생실을 무단으로 이동한 자 포함), 식당에서 도식하는 자, 생활관 내부에서 음주.흡연하는 자 등 수칙위반자 신고(신고자의 신원 보장)	3	
4	생활관생을 위하여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	분실물 습득 신고 등 각종 선행 및 봉사활동	1	
5	생활관생의 모범이 되는 행동	생활관생 및 행정실의 추천을 받아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 (오리엔테이션 교육, 화재대피훈련, 생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참여 등)	1~2	